

강원도립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

(제정) 1998-03-31 규정 제002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강의구분)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특수강의 : 실험, 실습,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위주로 한 강의
2. 보통강의 :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위주로 한 강의
3. 특별강의 : 국내외 저명인사의 초빙 강의
4. 초과강의 : 전임교원으로 책임시간 이외의 강의
5. 시간강의 :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하는 강의

제3조(전임교원의 책임시수) 전임교원의 책임 시간수는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 30조 각 호의 규정과 같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25.>

제4조(한계시수) 전임교원의 한계시수는 주당 18시간으로 하며, 시간강사의 강의 한계시수는 주당 12시간까지로 한다. 다만, 매학기 개강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 시수 한계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초과시수) 전임교원의 초과 시수는 평교수의 경우 주당 9시간, 보직교수의 경우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시수로 한다.

제6조(강사료) ① 시간 강사료는 실지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강사료 지급 구분은 별도로 정한다.

② 강의 시간은 50분 단위로 한다. 다만, 야간 강의의 경우 조정할 수 있다.

③ 학기말 종강에 있어서는 1주 미만을 1주에 계산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강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시험시간
2.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

⑤ 특수강의의 강사료는 보통강의의 강사료와 같이 지급한다.

⑥ 특별강의 및 외국인 강의의 강사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시간강사의 임명) 시간강사 임명은 학칙시행세칙 제34조 각 항의 규정에 의거 총장이 위촉한다.

부 칙(1998. 3. 31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